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에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법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며 교대근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1명, 8급 4명, 9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관세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이 수행하는 인사업무를 운영지원과로 이관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세관비즈니스센터를 각각 관세인재개발원과 지원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청 내 인사제도의 개선,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제20조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0조의4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세관장소속하에 세관비즈니스센터”를 “세관장 소속으로 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을 각각 “지원센터장”으로, “관할구역에”를 “관할구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세관비즈니스센터”를 “지원센터”로 한다.

제25조 중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6장의2의 제목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연수원”을 각각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875”를 “4,8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875”를 “4,88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520”을 “4,528”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20호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소속기관) ①·② (생략)	제2조(소속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관세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u>관세국경관리연수원</u> 을 둔다.	③ ----- ----- ----- ----- ----- <u>관세인재개발원</u> -----.
제6조(기획조정관) ① (생략)	제6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② ----- -----.
1. ~ 4의2. (생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5. <u>청 내 인사제도의 개선 및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u>	<삭 제>
6. ~ 16. (생략)	6. ~ 16.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지원과) ① (생략)	제9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u>청 내 인사제도의 개선,</u>

	<u>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u>
8. (생략)	8. (현행과 같음)
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u>관세국경관리연수원</u> 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하부조직) ----- ----- ----- ----- ----- <u>관세인재개발원</u> ----- ----- -----.
제20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u>관세국경관리연수원</u> 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하부조직) ----- ----- ----- ----- ----- <u>관세인재개발원</u> ----- ----- -----.
제22조(세관관서의 명칭 등) ① (생략)	제22조(세관관서의 명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세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세관장소속하에 세관비즈니스센터</u> 를 둔다.	②----- ----- <u>세관장 소속으로 지원센터</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관세청장은 세관장 또는 <u>세관비즈니스센터장</u> 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능이나 업무에 대하여는 <u>관할구역에</u>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장 또는 <u>세관비즈니스센터장</u> 과 협의하여 해당 기능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u>지원센터장</u> ----- ----- <u>관할구역에도</u> ----- ----- <u>지원센터장</u> ----- -----.
⑤세관의 관할구역과 <u>세관비즈니스센터</u> 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u>지원센터</u> ----- ----- -----.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u>제14조제4항의 규정</u> 에 의하여 세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u>관세국경관리연수원</u> 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u>범위안에서</u>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하부조직) ----- ----- <u>제14조제4항의 규정</u> 에 따라 ----- ----- <u>관세인재개발원</u> <u>범위안에서</u> ----- -----.
제6장의2 <u>관세국경관리연수원</u>	제6장의2 <u>관세인재개발원</u>
제26조의2(직무) <u>관세국경관리연</u>	제26조의2(직무) <u>관세인재개발원</u>

<u>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u>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26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u>연수원</u> 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① <u>관세인재개발원</u> ----- ----- -----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u>연수원</u> 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 ----- ----- <u>관세인재개발원</u> ----- ----- ----- -----.
③ <u>연수원</u> 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u>관세인재개발원</u> ----- ----- ----- -----.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정원) ① -----관세인재개발원-----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75</u>	<u>4,883</u>	+8
일반직 계	<u>4,875</u>	<u>4,883</u>	+8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520</u>	<u>4,528</u>	+8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9